

-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審 査 報 告 書

2006. 5. 1.
제249회 임시회

1. 심사 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6년 4월 14일
- 회부일자 : 2006년 4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6. 4. 27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실장 박 경 국)

가. 제안 이유

-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과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된 차량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면제대상에 포함시켰으며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및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범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하고 임대면적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대상의 추가로 이와 관련된 조문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면제 신설 (안 제2조)
-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2조 및 안 제3조)
 - 자동차 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른 화물적재 면적이 2㎡미만인 승용자동차(무쏘픽업,코란도밴 등)에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및 범위 확대 (안 제13조)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추가(취득세, 등록세,공동시설세)
 -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5%감면 규정 신설
- 지방의료원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감면 신설 (안 제5조의1)
-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 추가 (안 제26조)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 기업도시 개발사업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연기봉)

- 본 조례안은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도세감면대상의 확대 및 추가 등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2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의 취.등록세 면제,
- 안 제2~3조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화물적재 면적이 2㎡미만인 승용자동차(무쏘픽업,코란도밴 등)의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 안 제13조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 공동시설세 25% 감면 규정 신설,
- 안 제5조의1 지방의료원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등임.
- 아울러 안 제2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중 기업도시 개발사업 등이 해당됨.

○ 검토결과, 관련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임무수행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자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이해관계인에게 세감면혜택을 주려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타당하고 바람직한 조치로 여겨짐.

○ 다만, 도세감면대상 확대에 따라 세수증감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추가 감면대상중 “특수임무수행자”의 정의가 다소 모호한데 선별기준은 무엇인지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로 하고, 동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제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내에 공동 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무원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 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무원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

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 의무 기간 내에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5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신고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1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 신고 지역 내에서 2005년 8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8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p> <p>① (생략)</p> <p>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p> <p>③ (생략)</p> <p>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p>	<p>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가 ----- ----- ----- -----.</p> <p>③ (현행과 같음)</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p>

<p>2.~4.(생략)</p> <p>제3조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생략)</p> <p>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p>	<p>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p> <p>2.~4.(현행과 같음)</p> <p>제3조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p> <p>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p> <p>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p> <p>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p>
--	---

2.~4. (생략)

<신설>

2.~4. (현행과 같음)

제5조의1(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 2조 제 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 (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 2조 제 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 (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 74조 제 1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 9조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신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 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분의 2를 경감한다.

②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 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시행령제 9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 의무기간내에 동법시행령 제 9조 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신설>

당해 공동주택(「주택법」제 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 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제12조제1 항제 호와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무원 임대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초과149 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p><신설></p>	<p>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p>
<p>제26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제1호·제5항 제</p>	<p>제26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p>

호·제12항제3호(가)목 및 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동법 제12조의2항 단서·제5항 단서 및 제1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신설>

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5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신설></p>	<p>2. 「조세특례제한법」 제 12조의 2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p>
<p><신설></p>	<p>3. 「조세특례제한법」 제21 조의 2제12항제 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신설></p>	<p>4. 「조세특례제한법」 제 12조의 2제12항제 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p>

【관계법령발췌】

□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및 제8조(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및 일반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대부실시)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 (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지구입·주택신축·주택개량·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①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2.5.24, 2003.1.2, 2003.11.22, 2004.12.6>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 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등 승차공간과 분리된 화물적재공간이 있는 자동차

나.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다.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씨씨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지방의료원"이라 함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법인)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설립 및 등기)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다.

②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7589호, 2005.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는 지방의료원으로 본다.

□ 임대주택법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①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05.7.13>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

건 신고시 임대차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②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7.13>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5.9.16>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2.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2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 투자 진흥지구의 개발사업 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 개발구역 (이하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 ⑫ 생략